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대체인력 지원 업무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사)서울특별시 시우회(이하 “시우회”라 한다)는 상호 우호 협력관계를 확인하고, 서울시 국·공립 초등학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보안관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교보안관 대체인력 지원 업무”(이하 “사업”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서울시”가 학교보안관 대체인력 사용의 목적을 위해 대체 인력 지원 사무를 “시우회”에게 위탁 함에 있어 “서울시”와 “시우회”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개요) “서울시”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명 : 학교보안관 대체인력 지원
2. 사업기간 : 2018. 02. 01 ~ 2019. 01. 31
3. 배치시기
 - 경조사 및 병가 등에 따른 결원 시(연중)
 - 연가 사용으로 인한 결원 시(학기 중에 한함)
4. 대체인력비(1일) : 금65,240원정(금육만오천이백사십원) ※ 단, '19년은 당해연도 단가 적용

제3조(사업의 관리) ① “서울시”는 “사업”에 관하여 대체인력 예산지급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시우회”는 “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 전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1. 학교보안관 대체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
2. 대체인력 POOL 조성 [60 ~ 100명, 만 67세 이하('51. 1. 1. 이후 출생)]
3. 대체인력 수시 교육에 관한 사항

③ “시우회”는 “사업”의 준비 및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제반여건 기타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지연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사업의 시행) ① “서울시”는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배치 희망 학교는 일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시우회”에 필요한 날의 7일 전부터 최소 전일 오전까지 대체인력 배치를 요청한다.

② “시우회”는 학교의 배치 요청에 따라 대체인력을 정해진 날에 배치한다.

③ “시우회”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관계 법규 및 각 학교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시우회”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시우회”는 대체인력을 배치함에 있어 지역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신청학교 인근 거주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인력 POOL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의 지급) “서울시”는 대체인력 배치에 따른 소요경비(이하 “대체인력비”라 한다)를 해당 학교에 지원하여, 학교는 “대체인력”에게 대체인력비를 지급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 “서울시”는 사업과 관련한 “시우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시우회”는 대체인력이 배치된 다음 달 5일까지 지난 달 대체인력 운영현황을 “서울시”에 보고한다.

③ “서울시”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시우회”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④ “서울시”는 사업과 관련한 “시우회”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우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 등) ① “시우회”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서울시”가 제3자에게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시우회”는 이를 “서울시”에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③ 위 ①②항의 경우, “시우회”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서울시”에서는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협약의 해지 등) ① “서울시”와 “시우회”는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서울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우회”는 “서울시”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와 “서울시”의 정책 변경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2. “시우회”가 협약 위반, 협약상의 의무불이행 등으로 사업을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우회”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다수의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시우회” 또는 회원들의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5. “시우회”가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 제공, 부정행위 등 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비밀유지의무) “시우회”는 이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서울시”의 비밀사항 및 기타관련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와 “시우회”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서울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제11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이 개시되는 날부터 협약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협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서울시”가 지급한 운영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정한 비밀유지 의무는 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 ③ “시우회”는 이 협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서울시”와 “시우회”가 서명 날인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1월 일

“서울특별시”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시우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 마포구 만리재로 15, 1209
(공덕동, 제일빌딩)

시 장 박 원 순

대표이사 김 의 재